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번호 | 16 - 43 |
|------|---------|

제출년월일 : 2016. .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사유

치매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상위법 개정 반영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선정위원회 근거 마련을 통하여 치매지원센터를 위탁하는데 공정한 업무처리와 치매지원센터를 이용하는데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변경과 「노인복지법」의 치매관련 조항이 삭제되고 「치매관리법」의 제정에 따른 근거법령 개정.
(안 제1조)
- 나. 치매지원센터 위치는 행정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자 삭제(안제2조제2항)
- 다. 치매지원센터 이용대상은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에 제한규정을 삭제 (안 제4조)
- 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초단체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위탁관리운영에 필요한 수탁자의 선정기준, 선정위원회 명확화 (안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제5조의5)

마. 운영위원회는 치매지원센터 주관으로 변경되어 삭제(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바. 기타 일부 조문 정비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치매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규제여부 :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에 해당되지 않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16. 4. 28. ~ 2016. 5. 18. (제출된 의견 없음)

2)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원안 동의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결과 : 원안 동의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5) 신·구조문 대비표 1부

6)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9조 및 「노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치매 관리 사업”을 “제11조 및 「치매관리법」 제3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으로,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를 “및 관리·운영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치매질환 검진”을 “치매검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조제5호 중 “지원 사업”을 “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인지건강센터””를 “인지건강센터”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위탁운영 할”을 “위탁운영할”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 치매지원센터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탁 기간”을 “위탁기간”으로, “하되 필요시 재 위탁 할”을 “하되, 한 차례만 재계약할”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수탁자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 및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5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수탁자 선정) ① 제5조2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때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5조의4에 따른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4(수탁자선정위원회) ①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지원센터 수탁자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③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전문가 : 1~2명
2. 치매관리분야 전문가 및 주민대표 : 1~3명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의원 : 2명
4. 관계 공무원(단, 전체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5(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심사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② 심사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심사대상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 본인은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탁 받은”을 “수탁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재 위탁”을 “재위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및 위탁협약 사항”을 “및 위탁 협약사항”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9조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위탁 업무의”를 “위탁업무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 보고·점검 결과 위탁 사무”를 “따른 보고·점검 결과 위탁사무”로, “인정될”을 “인정될”로 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16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위탁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아 운영 중인 기관은 위탁기간이 끝나면 재계약할 수 없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9조 및 「노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u>치매 관리 사업을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지원센터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p>제1조(목적) ----- ---- <u>제11조 및 「치매관리법」</u> <u>제3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u>----- ----- ----- <u>및 관리·운영에</u> ----- -----.</p> |
| <p>제2조(설치) ①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의한 <u>치매질환</u> <u>검진</u> 및 예방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u>치매지원센터</u>(이하 "치매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p> | <p>제2조(설치) ①----- ----- ----- <u>치매검진</u> ----- ----- ----- -----.</p> |
| <p>②제1항에 의해 설치한 <u>치매지원센터</u>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32-29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외부 건물을 임차하여 설치 할 수 있다.</p> | <p><삭제></p> |
| <p>제3조(기능) 치매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 <p>제3조(기능) ----- -----.</p> |

1. ~ 4. (생략)
5. 치매 치료비 지원 사업(저소득 환자 투약치료, 본인 부담금 지원)
6. ~ 8. (생략)
9. "인지건강센터" 운영(인지재활, 치매예방, 기억증진 프로그램 등)
10. (생략)

제4조(이용대상) 치매지원센터의 이용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포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구청장은 치매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분야의 전문 의료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1. ~ 4. (현행과 같음)
5. ----- 지원사업-----

6. ~ 8. (현행과 같음)
9. 인지건강센터 -----

10. (현행과 같음)

<삭제>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 위탁운영할 -----

② 제1항에 따라 치매지원센터를 -----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시 재 위탁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 그 밖
에 -----
-----.

③ 위탁기간-----하되, 한 차례만 재계약할-----.

제5조의2(수탁자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 및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5조의3(수탁자 선정) ① 제5조 2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때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5조의4에 따른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신 설>

제5조의4(수탁자선정위원회) ①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지원센터 수탁자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③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전문가 : 1~2명

2. 치매관리분야 전문가 및 주민대표 : 1~3명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의원 : 2명

4. 관계 공무원(단, 전체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

<신 설>

제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 받은 치매지원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수탁자는 보조금과 수탁자산을 사업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3.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위탁 협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

급할 수 있다.

제5조의5(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심사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② 심사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심사대상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 본인은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
수탁받은 -----

-----.

1. (현행과 같음)
2. -----

----- 재위탁-----
-----.
3. ----- 및 위탁
협약사항-----

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① (생략)

②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자비로 구입한 비품과 장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운영을 위탁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시설, 서류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보고·점검 결과 위탁 사무 처리가

-----.

제8조(위탁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

-----.

-----.

제9조(운영비 지원) ----- 제5조에 따라 -----

-----.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

-----위탁업무의 -----

-----.

②----- 따른 보고
· 점검 결과 위탁사무 -----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인정
될 때에는 시정 또는 필요한 조
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위원회 설치) 구청장
은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치매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1. 치매지원센터의 운영계획 수
립에 관한 사항
2. 치매지원센터의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3. 치매지원센터의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치매지원센터의 효
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
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관련분
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

-----인정될 -----

-----.

<삭 제>

<삭 제>

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보건법」·「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15조(준용) -----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

제16조(시행규칙) ----- 시
행에 -----
-----.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상위법령 신설 사항, 도로명 주소 변경 사항 반영, 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기준의 미비한 사항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 | |
|--------|---------------|
| 작성자 이름 | 보건소 지역보건과 김문주 |
| 연 락 처 | 02-3153-9062 |